

현행	개정안
제4조(총무국) ① (생략) ② (생략) 1~4(생략) 5.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6. (생략)	제4조(총무국)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1~4(현행과 같음) (삭제) 5. (현행 제6호와 같음)
제5조(재무국) ①재무국에 세정과, 세무조사과, 회계과를 둔다. ② (생략) 1. (생략) (신설) (신설) 2. (생략) ③세무조사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각호와 같다 1. 지방세 세원조사 2. 지방세 재조사 심사청구 ④ (생략)	제5조(재무국) ①재무국에 세정과, 회계과를 둔다. ②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2. 지방세 세원조사 3. 지방세 재조사 심사청구 4. (현행 제2호와 같음) (삭제) ③ (현행 제4호와 같음)

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결과

- 가. 제안일자 : 1995. 3. 17
나. 제안자 : 부천시장
다. 회부일자 : 1995. 3. 17
라. 상정일자 : 1995. 3. 24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세무부서 기구·인력보강, 시설물관리차량(고가사다리차, 살수차)의 운전원 증원, 위생환경

사업소와 수질환경사업소를 통합하여 환경사업소와 국제협력담당관 신설이 내부부에서 승인되고

- 시민회관 시설물 관리인력과 원미구 보건소 보일러 필수인력 보강 및 방법원 퇴직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 _____ 18명 정원순증

- 세무부서 정원 _____ 18명 순증
 - 본청 세무조사과 _____ 6명 감축
 - 원미구 세무과 분과(세무과, 징수과) _____ 10명 순증
 - 소사구 세무과(2계 신설) _____ 7명 순증
 - 오정구 세무과(2계 신설) _____ 7명 순증
- 시설물 관리차량 운전원 정원 _____ 2명 순증
 - 공원관리사업소 1명, 오정구 총무과 1명
- 국제협력담당관 정원 _____ 7명(상계조정)
 - 본청 총무과 국제협력계 _____ 3명 감축
 - 위생환경사업소 _____ 4명 감축
- 시민회관 시설물관리 필수요원 보강 _____ 2명(상계조정)
 - 본청 회계과 1명, 공업과 1명 감축
- 방법원 퇴직(소사구) _____ 2명 감축
- 원미구 보건소 보일러 운전원 보강 _____ 1명(상계조정)
 -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 1명 감축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없 음	없 음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 음

나. 반대로론

○ 없 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

8. 체계적 심사내용

○ 없 음

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359
의 결	95. 3.28
년 월 일	(제36회)

제출년월일 : 1995. 3. 17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☐ 제안이유

- 세무부서 기구·인력보강, 시설물관리차량(고가사다리차, 살수차)의 운전원 증원, 위생환경 사업소와 수질환경사업소를 통폐합하여 환경사업소와 국제협력담당관 신설이 내부부에서 승인되고
- 시민회관 시설물 관리인력과 원미구 보건소 보일러 필수인력 보강 및 방법원 퇴직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☐ 주요과장	18명 정원순증
○ 세무부서 정원	18명 순증
• 본청 세무조사과	6명 감축
• 원미구 세무과 분과(세무과, 징수과)	10명 순증
• 소사구 세무과(2계 신설)	7명 순증
• 오정구 세무과(2계 신설)	7명 순증
○ 시설물 관리차량 운전원 정원	2명 순증
• 공원관리사업소 1명, 오정구 총무과 1명	
○ 국제협력담당관 정원	7명(상계조정)
• 본청 총무과 국제협력계	3명 감축
• 위생환경사업소	4명 감축
○ 시민회관 시설물관리 필수요원 보강	2명(상계조정)
• 본청 회계과 1명, 공업과 1명 감축	
○ 방범원 퇴직(소사구)	2명 감축
○ 원미구 보건소 보일러 운전원 보강	1명(상계조정)
•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 1명 감축	

☐ 근거법규 :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

☐ 기타참고사항 : 별 첨

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시 본 청 : 1,271명
2. 직속기관 : 122명
3. 사 업 소 : 279명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 (정원의 총수) (생략)	제2조 (정원의 총수) (현행과 같음)
1. 시 본 청 : 1,252명	1. 시 본 청 : 1,271명
2. 직속기관 : 121명	2. 직속기관 : 122명
3. 사업소 : 281명	3. 사업소 : 279명
4. (생략)	4. (현행과 같음)

부천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결과

- 가. 제안일자 : 1995. 3. 17
- 나. 제안자 : 부천시청
- 다. 회부일자 : 1995. 3. 17
- 라. 상정일자 : 1995. 3. 24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하수종말처리장 1단계공사(1일 처리용량/15만톤)가 95. 6월 준공이 예상됨에 따라(현재 추진공정 98%) 업무성격이 유사한 위생환경사업소와 수질환경사업소의 통합함으로,
- 환경사업소가 설치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※ 95. 3. 10자 환경사업소 설치승인(내무부)